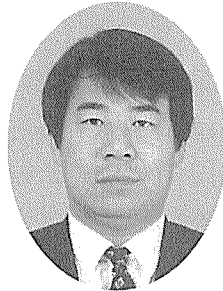




수입부과금 제도 이대로 좋은가?



우 성 근

〈 LG-Caltex정유 경영기획팀 부장〉

I. 서론

우리 나라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국제 석유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경제성장 둔화, 물가 및 실업률의 급격한 상승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심대함을 기 경험한 이래 석유의 10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자원 빈국으로서 국내석유수급 및 가격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불확실한 국제 석유정세에 능동적인 대응 방안의 하나로 석유사업기금 부과제도를 입안하여 1979년 10월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석유사업기금은 정부의 규제하에서 국제가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징수단가를 조정하는 변동기금제도로 운용되어 국내 석유판매가격의 가장 효율적 관리 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국제원유가와 국내판매가와와의 완충 역할로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내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석유사업기금 운용 규모가 커지면서 운용에 대

한 세간의 의혹이 제기되고 이를 전용하고자 하는 정부 각 부처의 영향력이 거세지면서 급기야 1994년 3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란 항목으로 정부 세입에 편입되게 되었으며 명칭도 석유사업기금에서 수입부과금으로 변경되었다.

1994년 가격자유화 전단계인 유가연동제가 도입됨에 따라 수입부과금은 종전 변동기금제도에서 고정기금제도로 운용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경제 발전, 석유산업 자유화 및 대체에너지 원간의 불형평 등으로 인한 수입부과금 제도의 전면적 재검토 시점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수입부과금제도의 실상을 짚어보고 동 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소견이나마 피력하고자 한다.

II. 현행 수입부과금제도의 문제점

II-1.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 규모 과대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입부과금제도는 우리나라만이

운용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표 4>에서 우리나라는 석유(원유)수입시 부과되는 관세를 보면 선진 주요국에서 단연 으뜸인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수입부과금까지 합하면 선진 주요국과 비교하여 그 차이는 훨씬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너지원별 징수 실적을 보면 1999.10월 현재의 경우 총 징수된 수입부과금 883.2십억원 중 석유 해당분이 841.1십억원으로 약 95%로 대부분 석유에서 수입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부과금 징수 현황

(단위 : 십억원)

	1995	1996	1997	1998	1999. 10
세입	695.0	886.1	1,003.4	1,204.7	883.1
석유	695.0	886.1	972.8	1,161.6	841.1
LNG	0.0	0.0	30.6	43.1	42.0
세출	1,427.6	1,681.6	1,925.8	2,052.3	1,430.1
석유가스사업	614.1	670.2	646.7	732.0	402.4
석탄사업	515.1	556.1	543.7	563.5	439.4
에너지기술개발	247.5	291.9	357.5	421.3	304.1
가스안전관리	0.0	0.0	119.8	77.2	49.5
일반광물개발	50.9	163.4	258.2	258.3	234.7

상기 <표 1>에서 1999.10월 현재 총세출 14,300억원 중 순수하게 석유산업과 연관된 분야에 사용된 것은 약5,110억원으로 36%만이 석유산업을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약 64%가 석유와 무관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석유와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가스 분야에 4,420억원이 투하됨으로써 거의 석유 분야와 동일하게 운용되고 있는 사실이다. 경쟁 대체제 간의 경쟁관계를 유지하려면 석유에서 징수된 부과금은 석유관련산업에 가스에서 징수된 부과금은 가스산업에 투하되어야 산업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부과금을 부담하는 납세자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2. 경쟁대체 에너지원간의 수입부과금 차등 부과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수입부과금은 주로 석유(LPG 제외)에서 징수하여 석유이외의 사업에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산업간 가격경쟁력 차이로 이어져 일부 산업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 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산업간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간의 경쟁력 저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만이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과거에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생각하지만 이제 시대 상황은 과거와는 달리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이고 보니 이에 대한 정부정책도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표 2> 수입부과금 및 관세 부과 현황

(2000년 3월 현재)

	원 유	LNG	LPG
수입부과금	\$1.7/B	\$0.6/B	\$0.0/B
관 세	5.0%	1.0%	1.5%

<표 2>는 경쟁관계에 있는 대체에너지원간 원가경쟁력에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정부가 표방하는 "Clean Energy" 정책에 수긍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 동안 국내 석유의 안정수급을 담당해왔고 앞으로도 담당해야 할 석유산업에 속한 종사자로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II-3. 원유와 석유제품의 수입부과금 부과

1998년도 석유산업 완전 자유화 이후 단기 차익을 겨냥한 소위 Hit and Run식의 수입업자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아직 이들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시현하고 있는지 정확히 발표된 자료는 없으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이 국내 시장을 심하게

교란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국내 석유수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존 정유사의 잉여 물량 증가로 심한 수급 압박을 받고 있는 사실이다. 물론 이들은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단지 그때그때의 단기 차익을 노리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정유사가 국내시장에서 폭리를 취한 적은 한번도 없다. 과거의 경영실적에서 나타나듯이 정유업평균 이익률은 국내 제조업평균 이익률 한참 밑에서 맴돌았다. 그러다가 겨우 1998년에 한번 상회를 했을 뿐이다. 이것을 두고 정유사가 폭리를 취한다고 주장하는 혹자가 있는데 이는 단면만을 보고 전체를 판단하는 코끼리 발바닥 같은 것이다.

1999년도의 경우 경질유 시장에서 신규 수입업자가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2%대를 상회하였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는 4%대에 육박할 것이고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국부적으로 유익한 것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철저한 자기냉철을 통하여 반문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물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가장 현명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기 경험하였듯이 석유파동이 다시 오지 말란 법은 없다. 석유 파동이 닥쳐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과연 이들이 얼마나 국내 석유 수급에 책임을 지고 이에 대처할 것인가 깊은 회의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보다 잘사는 또는 국제 시장에서 시장 개방을 위하여 갖은 압력을 행사하는 선진국들도 원료와 완제품간의 세금부과 차이를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심한 경우 완제품에 대하여 3배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란 법은 없다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물론 국가마다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 선진국 모두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하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표 3〉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부과 현황 (한 국)

	원 유	석유제품
수입부과금	\$1.7/B	\$0.6/B

〈표 4〉 주요국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관세 비교

	원 유	휘발유	등 유	경 유
한 국	5.0%	5.0%	5.0%	5.0%
일 본	215¥/kl	1,400¥/kl	570¥/kl	1,270¥/kl
미 국	0.105\$/B	0.525\$/B	0.105\$/B	0.525\$/B
E U	무세	5.2%	5.2%	3.8%
대 만	2.5%	12.5%	5.0%	5.0%

〈표 3〉, 〈표 4〉에서 우리나라의 수입부과금 및 관세 부과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에 차이가 없는 반면에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에서는 상당한 폭의 차이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는 자국에 알맞은 산업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이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음은 국내 정유산업이 완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오만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III. 결어

국가의 산업 정책은 국부와 직결된다. 지금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석유산업은 칫솔 같은 생활필수품이 아니다. 산업의 동맥으로 수급불안 시 국내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설명으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정책은 환경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수립되고 운용되어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에 따라 자국에 알맞은 형태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제도에 대하여 소견이나마 몇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는 석유에 부과되는 수입부과금 징수단가(관세 포함)의 축소이다.

앞의 예에서 보았듯이 석유에서 과도하게 징수된 수입 부과금이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타 산업에 지원되어 결과적으로 석유산업은 이중의 타격을, 타 산업은 힘하나 안 들이고 혜택을 받고있는 셈이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석유산업에서 징수된 수입부과금은 석유관련산업에 이용되어야 하고 타 산업에서 징수된 수입 부과금은 동 산업에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부합되고 부과금을 납부한 국민에게도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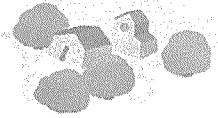
둘째는 경쟁대체관계에 있는 에너지원간 원가 경쟁력 형평성 유지이다.

출발전부터 몇 미터 앞서나가 있으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다. 정부 정책 차원이라고 한다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여 건설한 기존 국내 정제시설의 유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석유제품의 연산품 특성상 일개 유종의 수급불안은 타유종의 수급 불균형을 야기하며 장치산업의 특성상 잉여 물량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 건설에 4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을 반영하고 국부 차원에서 산업간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정책의 묘를 발휘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셋째는 원유와 석유제품간의 수입부과금(관세 포함) 차등 적용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수급 및 가격 안정화이며 그 중에서도 수급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 수급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는 이를 원천 봉쇄하여 안정적인 수급 균형을 꾀하고 이로 인한 국부를 높이는 것이 정책적인 판단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선진 주요국의 예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석유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관세를 포함한 수입부과금의 차등화가 그것도 선진국 수준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겠다. ☺

용어해설



• VoIP

무료 인터넷 전화서비스 뒤에는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라는 신기술이 있다. VoIP는 음성을 패킷으로 전환, 인터넷망(IP)을 통해 전송하는 것이다. 음성·데이터 통합기술로도 불린다. VoIP를 적용한 네트워크 장비만 설치하면 인터넷과 전화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일반 전화선의 경우 통화 중일 때는 거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같은 선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VoIP는 음성을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 보낸다. 이 때 빈 공간에 또 다른 음성이나 데이터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다. VoIP의 효율성이 그만큼 높다. VoIP를 이용한 인터넷 전화는 거리에 따라 요금을 매기는게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제전화와 시외전화도 시내전화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시내전화 요금까지 받지 않겠다는 게 바로 다이얼패드와 같은 무료 전화 서비스이다. VoIP는 전화 뿐만 아니라 인터넷방송, 인터넷영화, 영상 인터넷폰 등에도 적용된다. 시장도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데이터케스트는 오는 2003년 VoIP 관련 시장이 21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벤처인큐베이터

벤처 인큐베이터란 쉽게 말해 창업보육센터라고 할 수 있다. 잠재성이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창업 단계에서부터 경쟁력과 생존력을 지닌 기업으로 성장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업체를 가리킨다. 국내에서는 창업투자회사나 회계법인이 주로 많이 활동하고 있다. 벤처 인큐베이터가 하는 업무를 보면 외부자금 유치를 비롯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과의 제휴, 시설에 대한 자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등록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해준다.